

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  
(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힐링센터 조성)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산동읍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생활서비스 시설이 신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, 농촌지역에 위치한 기존 문화시설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통합형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복지·문화·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【취득재산】

- 위 치 :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105-3, 105-20, 105-21번지
- 대 상 :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(리모델링 990㎡, 증축 612㎡)
- 기준가격 : 9,528백만원
- 사 업 비 : 9,528백만원(공사비 8,325, 설계비 311, 감리비 892)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8년
- 주요시설 : 복지목욕실, 북카페, 대강당 등

○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농촌협약 공모선정 : '23. 6월
- 농촌협약 체결(농림축산식품부↔구미시) : '24. 4월
-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: '24. 10월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계획지원단(경상북도) 협의: '25. 9월
- 기본계획 승인 : '26. 3월
-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: '26. 4월
-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: '26. 9월
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12월 ~ '28. 12월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#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1,602	9,528
	1.기타 취득	1건	1,602	9,5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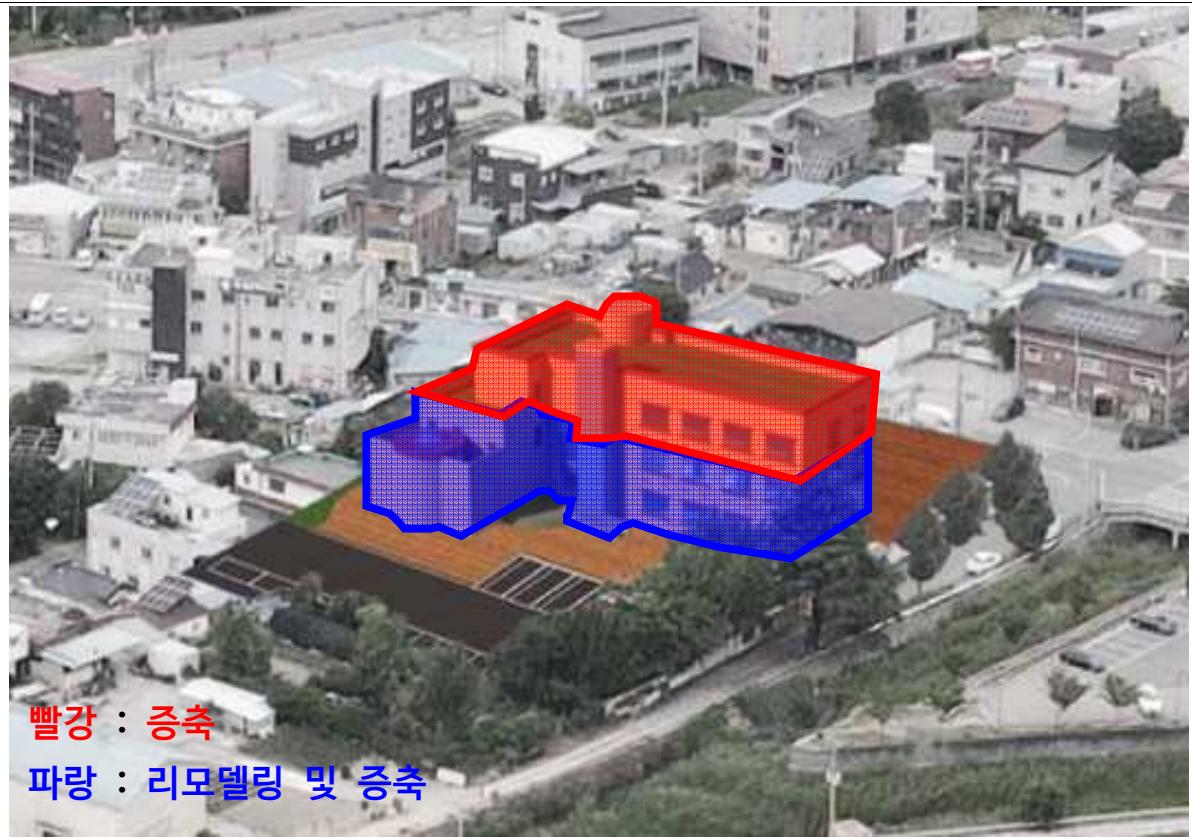
##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량(m <sup>2</sup> )					
총계			1,602	9,528				
취득	건물	산동읍 적림리 105-3번지, 105-20번지, 105-21번지	1,602	9,528	2028년	힐링센터 조성	구미시	리모 텔링 및 증축

# 위 치 도



## 4. 검토의견

### 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산동읍은 신도시 지역에 생활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·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, 기존의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복합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리모델링 및 증축 과정에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준공 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.
-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, 본 사업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누락된 채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명백한 행정적 절차상 오류로 판단됨.

-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엄중한 주의가 요구되며,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관련 사업 추진 시 ‘선(先) 계획 승인, 후(後) 예산 편성’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전면 점검해야 할 것임.